

●법무부령 제1127호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6년 10월 01일

법무부장관 인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3항 중 “「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」”을 “「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70조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203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239조제1호 중 “검찰국장”을 “형사사법국장”으로 한다.

제263조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◇주요내용

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,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되고,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공소청법」과 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10. 2.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, 2026. 3. 24. 공포, 10. 2. 시행)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,

법무부 하부조직인 검찰국의 명칭을 형사사법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36728호, 2026. 9. 29. 공포, 10. 2. 시행)됨에 따라,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